

정정신고(보고)

2018년 5월 24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년 4월 16일
3. 정정사유 : 환매수수료 삭제
4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전	정정후
제25조의3(수익증권의 전환)	<p>⑤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</p> <p>2.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. 다만,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(삭제)
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<p>③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u>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</u>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</p>	<p>③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u>관련세금 등을</u>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</p>
제41조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</p>	<p>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p>

	<p><u>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 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<u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순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“이익금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</p>
	<p><u>1. 종류 A 수익증권</u></p> <p><u>가. 30 일 미만 : 이익금의 10%</u></p>
	<p><u>2. 종류 A-e 수익증권</u></p> <p><u>가. 30 일 미만 : 이익금의 10%</u></p>
	<p><u>3. 종류 A-G 수익증권</u></p> <p><u>가. 30 일 미만 : 이익금의 10%</u></p>
	<p><u>4. 종류 C 수익증권</u></p> <p><u>가.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50%</u></p>
	<p><u>5. 종류 C2 수익증권</u></p> <p><u>가.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50%</u></p>
	<p><u>6. 종류 C3 수익증권</u></p> <p><u>가.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50%</u></p>
	<p><u>7. 종류 C4 수익증권</u></p> <p><u>가.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50%</u></p>
	<p><u>8. 종류 C-e 수익증권</u></p>

	<p>가.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<u>50%</u></p> <p><u>9. 종류 C-I 수익증권</u> 가.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<u>50%</u></p> <p><u>10. 종류 C-F 수익증권</u> 가.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<u>50%</u></p> <p><u>11. 종류 C-G 수익증권</u> 가. 30 일 미만 : 이익금의 <u>10%</u></p> <p><u>12. 종류 C-S 수익증권</u> 가.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<u>50%</u></p> <p><u>13. 종류 S 수익증권</u> 가. 30 일 미만 : 이익금의 <u>10%</u></p> <p><u>(3)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저축약관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	
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	<p>④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 또는 통지된 날(모투자신탁 신탁계약의 변경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)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</p>	<p>④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 또는 통지된 날(모투자신탁 신탁계약의 변경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)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한다. 다만,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</p>

	<p>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.</p>	<p>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.</p>
제45조(집합투자 기구의 해지)	<p><u>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④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	<p>(삭제)</p> <p><u>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
부 칙	(신설)	<p>부 칙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